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법학교육 참여 경험 분석

황영아¹ · 한명진²

¹한성대학교 교육연구교수, ²한성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법학교육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에 법학을 주요 교과로 다루는 학과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1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코딩-범주화-타당성 확인 단계를 거치는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해 결과를 범주화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성인대학생의 법학 관련 학과 선택, 법학 관련 교과목 수강 동기, 수강 경험, 학습 성과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었으며, 법학 관련 학과 입학은 학위 취득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 학과 중복 지원의 결과, 과거의 법 관련 업무 경험은 법학 관련 학과 선택에 긍정적 영향, 법학 관련 교과목 수강 동기의 다양성, 법학 관련 교과목 수강 신청 시 두려움과 기대 공존, 강의를 통한 기초 학습과 토의 및 팀 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법률 용어 이해 어려움, 실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요구, 법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일상생활에서 법 관련 이슈 이해 수준 향상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교육 운영에 있어 기초교양측면에서 법교육과 전공과목으로서 법학교육의 융합, 동료와의 팀활동이나 토론을 포함한 학습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사전 법 관련 정보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주제어 법학 교육, 대학 평생교육, 성인학습자, 성인교육, 반복적 비교분석법

논문접수: 2024년 4월 25일, 논문심사: 2024년 6월 22일, 게재승인: 2024년 6월 25일

Corresponding to 한명진, mjinhan@hansung.ac.kr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1. 서론

법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발생하는 마찰과 충돌을 방지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양의 중세대학 때부터 신학, 의학과 함께 전문 학문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전문 학문으로 이어져 온 것은 전문법조인을 배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나,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법학교육체계가 바뀌며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현재 학부 수준의 법학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 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 법학도가 아닌 학과에서의 법학교육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

전보다는 양적 측면에서 다소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사회의 근간으로서 법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그간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법 관련 지식을 적극 활용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학부 수준에서의 법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법조인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법적으로 훈련된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영록, 2017)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법원직, 검찰직 등과 같은 법률직 공무원, 공인노무사나 감정평가사와 같은 유사법조인,

기업의 법무 관련직 등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둘 수 있다. 또한 비단 법률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산업 분야 혹은 직무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법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다 보니, 일부 전공에서는 해당 분야의 법이나 정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공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전공 분야의 법률 현황이나 법적 이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나 법의 기본적인 원리나 구조 등을 학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학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교육을 타 학문과의 융합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학은 국가의 기본제도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정치학이나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과 긴밀한 교류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학문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음은 물론 기술과 법 및 지적재산권과 같은 분야는 융합학문시대를 선도해가는 신 성장 학문으로 자리잡고 있다(김정현, 2018). 이 밖에 교양교육으로서의 법학 또한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교양법학교육은 민주법치주의의 보루가 되는 민주법치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연기영, 2019)이다.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 진출해서도 분야에 관계 없이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는데, 이는 법적 사고에 기초한 문제해결이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최봉경, 2017).

이러한 법학 학부교육의 변화흐름 속에 일부 대학에서는 재직자 혹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존의 일반 법학과와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학과가 있는 반면 행정학이나 정책학 등과 융합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과도 있다. 전자는 앞서 언급한 전문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후자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기는 하나 법 이외 행정이나 정책 분야 전문가 또한 인력양성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학습자 대상 학부 법학교육은 공통적으로 직업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실

제 대학 내 학위과정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또한 직업, 진로 및 경력개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최상덕 외, 2018)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진출을 준비하는 여타의 대학생들과는 차별화된 학습동기를 가지며, 이러한 차이는 비단 학습동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Knowles (1980)는 성인은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 풍부한 경험, 다양한 학습요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학습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들의 법학교육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간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교육이 아닌 학부 수준의 법학교육 측면에서는 법학교육체계 개편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법학교육의 방향성 탐색(이영록, 2017; 연기영, 2019; 김정현, 2018)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외 교양교과로서 법학교육(최봉경, 2017; 오태곤, 2018), 법학교육방법(박정원, 이성흥, 2009) 등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법학 분야에서 대학 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 내 성인학습자 측면에서도 성인학습자의 역량수준(류영철, 2023), 학습참여동기(임명희 외, 2021) 등 학습자의 특성을 다루거나,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황영아, 2021)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분야 전공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법학교육 참여 경험 탐색을 통해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교육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내 성인학습자

성인은 연령을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교육을 연구하는 학

자들은 성인을 학령기 학생과 구분지어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학습자는 학령기를 지난 비전통적 학습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식교육을 중단하고 전통적인 교실과는 다른 적절한 교육법이 요구되는 개인(Taylor, Marienau, & Fidler, 2000)으로, 학업 중 부모, 직장인 등 다양한 책임을 수행(Dill & Henley, 1998)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Markle(2015)은 비전통적 학습자를 고교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25세 이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혹은 배우자나 보호자의 역할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설명한 바 있다.

국내대학들도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구분하여 성인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서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전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전형 내 전형 구분을 재직자 전형과 만학도 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3). 여기서 재직자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 주 대상이며, 만학도 전형의 경우 수도권은 30세 이상, 비수도권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성인학습자는 대학진학 적령기를 경과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만 25세 이상의 학생을 의미(양은주, 김계하, 2017)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내 성인학습자는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터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고교 졸업 후 사회로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차별화된 학습 동기를 가진다. Houle(1961)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를 목표 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목표 지향은 직무능력 향상이나 자격증 취득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활동지향은 사회적 교류 혹은 상호작용을 위해 참여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학습지향은 배움과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내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학위과정 참여 동기를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대학 학위과정 참여 동기는

직업, 진로 및 경력개발 58.6%, 순수한 배움에의 열정 16.4%, 취미 활동 또는 개인적 즐거움 11.3% 등의 순(최상덕 외, 2018)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학 내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대훈(2023)의 연구에서는 학위 취득, 직무 관련 능력 향상, 창업 준비, 이직 등 목표지향적 성향이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및 자아실현 등 학습지향적 성향이 31.6% 등으로 나타난 반면, 대인관계 확장은 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 성인학습자들은 학위나 직업 관련 역량 함양 등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인의 학습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됨(Knowles, 1980)에 따라 삶의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목표 지향적인 동기인 직무 관련 능력 향상, 창업, 이직 등은 직업 생활 영역과 연관된 요구로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대학 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공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최대훈, 2023)에 따르면 전공 선택 기준은 업무와의 연관성 30.7%, 미래 취업·전직·창업 가능성 20.2% 등 직업 관련 요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 전공 분야에 대한 선호도 31.6%, 과거 전공과의 연관성 8.8%, 주변 추천 8.8% 등으로 나타난다.

2. 안드라고지

가. 안드라고지 전제 : 성인학습자의 특징

안드라고지는 Malcom Knowles가 아동교육인 페다고지와 구분하여 제시한 성인교육의 원리로, 성인학습과정의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로 활용되며 성인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Knowles(1980)는 성인은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 풍부한 경험, 다양한 학습요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학습 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학령기 학생과 구분하여 학습자의 자아개념, 경험의 역할, 학습준비도, 학습성향, 동기, 알고자 하는 욕구 등 6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 자아개념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성숙해 가며 자아개념이 의존적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 가정에 기초하여 자기주도학습이 발전하게 된다. Knowles(1980)는 성인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두 번째 경험의 역할 측면에서 Knowles(1970)는 성인학습자의 선행 경험이 그들에게 최고의 자원과 도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시기를 보낸 학령기 학생에 비해 성인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은 성인학습자 개개인마다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Bull & Kimball(2000)은 이러한 Knowles의 이론을 토대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학습준비도 측면에서 성인은 자신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Knowles, Holton, & Swanson, 2005, 최은수 역, 2010). 학습준비도는 발달 단계상의 과업 혹은 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데, 성인은 발달 과정상에서 혹은 역할에 따른 책임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을 중심으로 학습에의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에 성인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Cross, 1980)가 있으며, 성인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습준비 상태와 개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습을 촉진하는 경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번째 학습성향 측면에서 성인학습자는 문제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 성인은 성숙해 가며 시간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 학령기 학생이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르게 성인은 현재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선호한다. 이에 교과 기반의 학습을 주로 행하는 학교 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며, 성인은 학습이 실제 문제를 처리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효과적

으로 습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학령기 학생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성인학습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의해 내적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내재적 보상은 즉각적으로 개인에게 오는 보상으로 이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부여된다(Knowles, Holton, & Swanson, 1998). 이는 성인학습자들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할 것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교육 현장에서는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 측면에서 Knowles(1968)는 성인은 기존에 수행한 학습의 결과로서 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다. 성인은 개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학습 요구가 발생하고, 실제적인 적용을 원하는 성향이 짙다. 이러한 관점에서 Tough(1979)는 성인은 일반적으로 학습 성과 측면에서 학습의 이점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투자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즉각적 요구와 프로그램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인식하거나, 잠재적 성과만 확인되는 경우 학습에의 참여 동기가 부족(Boone, Safrit, & Jones, 2002)하게 된다. 학습동기는 학습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학습에의 동기 부여는 학습 과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성인학습자의 자기 훈련, 동기 부여, 인내, 목표 지향, 향상된 자신감 등은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Davis, 2015)을 미치게 된다.

나. 안드라고지 원리

Knowles는 이상에서 살펴본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전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동 대상의 페다고지와는 차이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인학습의 원리로서 안드라고지를 제시한다. 안드라고지의 과정에서 성인의 선행 경험은 풍부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학습준비도와 현재 처한 문제 중심의 접근은 학습 과정에서 성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에 아동교육인 페다고지가 교사 중심 교육인데 반해

학습자 중심의 특성이 강조되게 되는데, Ross-Gordon (2011)은 성인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임을 강조한다. 학습에 있어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학습에 대한 높은 수준의 내적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며, 동시에 접근 방식이 실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심임을 의미한다. 이에 최근에는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박승배, 2013)되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의 자기주도적 참여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로, Knowles(1980)는 성인학습자가 교육 활동 참여 과정에서는 종종 수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Knowles, Holton, & Swanson(2005, 최은수 역, 2010)가 제안한 안드라고지의 과정 요소는 총 8단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이상에서 논한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 8단계는 학습자 준비, 바람직한 분위기 형성, 상호 기획, 학습 요구 진단, 프로그램 목표 수립, 학습활동 설계, 학습활동, 프로그램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인 학습자 준비시키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준비시키며, 교

수자는 학습자를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바람직한 분위기 형성 단계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앞선 두 단계가 준비 단계였다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는 수업을 위한 투입 단계로 수업을 상호 계획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공동에 의해 학습 요구를 진단한다. 이후 다섯 번째 단계는 학습활동이 시작되는 단계로 상호 협의 하에 학습목표를 공식화하게 되며,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계획을 설계하고 본격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학습활동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탐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습 활동 종료 후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앞선 네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재진단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평가를 하게 된다. 이상의 과정들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내용 중심의 아동 대상의 페다고지 모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는 절차와 자원을 제공한다.

<표 1>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의 비교

구분	안드라고지	페다고지
어원	그리스어의 'andros(성인)'와 'agein(이끈다)'에서 나온 성인의 학습을 돕는 기술과 과학의 의미	그리스어의 'paid(어린이)'와 'agogos(지도하다)'에서 유래 어린이를 가르치는 기술과 과학을 의미
중심	학습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결정에 학습자가 참여,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자원으로 존중됨 (학습자 중심 교육)	학습할 내용과 방법, 시기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교사가 함 (교사 중심 교육)
교육과정 모델	[안드라고지 모형(과정모형)] • 상호존중, 비형식적, 협동적 수업분위기 •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협동에 의한 교육 계획, 요구 진단, 교육목표의 설정 및 평가 • 집단토의, 역할극, 현장방문연구, 실험, 시범, 세미나, 사례연구 등의 방법 활용 • 성인교육자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촉진자	[페다고지 모형(내용모형)] • 권위적, 경쟁적 수업분위기 • 교사주도 하의 교육계획, 요구진단, 교육목표 설정 및 평가 • 교과목 및 내용의 논리에 따른 수업 • 교사의 전통적인 지식전달 방식 • 강의, 읽기, 과제, 준비된 시청각 자료 제시 등의 방법 활용
교육활동 설계	• 상호존중, 비형식적, 협동적 분위기 • 학생과 교사 간 상호기획의 모색, 상호자기진단, 상호 협상에 의한 목표설정 • 준비도에 따른 계열, 문제의 단위설계 • 상호간의 평가	• 권위적, 형식적, 경쟁적 분위기 • 교사주도 기획, 욕구 측정, 목표설정 • 교재의 논리성, 내용의 단위 설계 • 교사주도 평가
주요특징	• 자기주도적 학습, 구성주의, 진보주의 • 노울즈 성인교육학 • 함께하는 교육	• 교사주도, 객관주의, 주지주의 • 헤르바르트 학교교육학 • 가르치는 교육

출처) 민경훈(2016).

3. 법학교육

가.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2009년 1학기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확연히 구분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전에는 기존 다른 사회과학계열전공과 마찬가지로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모두 법학소양교육과 법률 전문가 양성교육을 담당하여 왔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게 되면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현재의 법학교육은 법률 전문가 양성교육 이외의 부분에서는 시민교육, 기초교육, 교양교육의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김정현, 2018: 93).

이러한 분위기는 중등교육에서도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양상이다. 중학교에서 법과 관련한 수업은 ‘사회’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사회’ 및 사회탐구영역 내 ‘정치와 법’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정치와 법’ 교과목의 경우 대학교 법학과에서 4년의 기간동안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학 입학을 위한 수험과목으로서의 지위의 한계 때문에 법학을 ‘학문’으로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학 입시용으로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정치와 법’은 개편 이전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명이었다. 그러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을 ‘정치’ 이후로 수정하는 교과목명 변경의 교육과정 개편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와 법’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사실은 그러한 개편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이다(최우정, 2022).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학부, 즉 전공 영역에서의 법학교육은 법전문원 설치 이후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나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의 비법학과에서의 법학교육(예컨대, 공공인재학부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의 법학과의 법학교육,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법학

과가 아닌 행정학과나 경찰학과 등에서의 법학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학부와 다른 영역에서 최근에 법학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재직자 대상으로 한 단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다. 이는 기초교양과 일반인에 대한 시민법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교육’과 전공과목으로서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법학교육’(곽한영, 2012)이 융합된 형태로서, 최근 다수의 대학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분야에서의 재직자 대상으로 한 단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았다.

나.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교육

대학 내 단과대학 또는 학과를 두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부 단위 법학교육을 운영하는 곳은 H대 융합행정학과와 M대 법무행정학과 그리고 일반학과 내 재직자 전형으로 K대 기업융합법학과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H대 융합행정학과의 경우,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융합된 형태로서, 공공 및 민간 행정전문가와 법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 관련 교과목의 경우, 1학년 이수과목으로 민법총칙, 법학개론, 법과 사회, 헌법의 이론과 실제, 2학년 이수과목으로 헌법실무, 행정법총론, 사회보장법실무, 행정구제실무, 3학년 이수과목으로 행정법각론, 지방자치와 법, 공법실무, 4학년 이수과목으로 고용관계와 법 그리고 법과 여성 과목이 있다. 전체 25개 과목 중 법학 과목은 13개이다(H대 융합행정학과 홈페이지).

M대 법무행정학과의 경우, 앞서 살펴본 H대 융합행정학과와 마찬가지로 법학과, 행정학과와 정책학이 융합된 학과로서, 전공과목 이수 2학년때부터 시작된다. 2학년 이수과목으로서 민법총론, 헌법입문, 형법개론, 법사학을, 3학년 이수과목으로 행정법개론, 계약법, 재산법, 가족법, 상법개론, 유가증권법, 경제법개론을, 4학년 이수과목으로서 민사소송법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법개론, 사회보장법, 기업법무가 있다. 2~4학년 총 30과목 중 법학 과목은 17개이다(M대 법무행정학과 홈페이지).

K대 기업융합법학과의 경우 1학년 이수과목으로 법의 기초, 민법총칙, 헌법원리와 제도, 형법총론, 채권총론, 리얼마인드세미나,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2학년 이수과목으로 기본권론, 헌법소송법, 행정법총론, 채권각론, 형법각론, 물권법, 행정작용법이 있고 2~4학년에 걸친 전공선택과목으로 법언어와 논리, 경제법, 중국법과 사회, 통일과 법, 고용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총론, 국제법, 사회보장법, 가족법, 금융법, 법철학, 비교법, 북한법, 저작권법, 회사법, 민사소송법, 경찰형사법 세미나,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 중국진출기업법무, EU법, 인공지능과 법적인증, 노사관계법, 조세법각론, 디자인보호법 등이 있다. K대 기업융합법학과의 경우 기존의 일반 법학부와 교과과정 설계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K대 홈페이지).

이 중 재직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단과대학을 두고 있고 법학과 행정학을 융합하는 형태로 학과를 구성한 H대 융합행정학과와 M대 법무행정학과의 경우 편성과목을 비교할 만 하다. 두 학과 모두 법학과 행정학(정책학)을 비슷한 비율로 편성하고 있는데, 한가지 차이점은 H대 융합행정학과와 M대 융합행정학과는 1학년 이수과목으로 개설된 민법총칙, 법학개론, 법과 사

회 이외에 모두 공법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된 반면 M대 법무행정학과는 민법(민사소송법 포함), 상법 등 공법 이외의 사법 과목도 편성한 것이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 두 학과의 법학과목을 표로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대학 내 법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학을 주요 교과로 다루는 수도권 소재 H 대학 융합행정학과 재학생 중 법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25세 이상 대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을 H 대학으로 한정된 것은 비교적 유사한 경험을 보유한 조사 대상자를 통해 주제와 관련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전시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답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 2>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법학 교과목 운영 사례

학년구분	H대 융합행정학과	M대 법무행정학과
4학년	고용관계와 법, 법과 여성	민사소송법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소비자보호법, 지적재산권법개론, 사회보장법, 기업법무
3학년	행정법각론, 지방자치와 법, 공법실무	행정법개론, 계약법, 재산법, 가족법, 상법개론, 유가증권법, 경제법개론
2학년	헌법실무, 행정법총론, 사회보장법실무, 행정구제실무	민법총론, 헌법입문, 형법개론, 법사학
1학년	민법총칙, 법학개론, 법과 사회, 헌법의 이론과 실제	(교양과목 이수)

출처: 각 학교 홈페이지 교과과정소개

<표 3> 연구참여대상

	이름	학년	연령대	법학 관련 수강 교과목 수		이름	학년	연령대	법학 관련 수강 교과목 수
1	양○○	1	20대	1	8	김○○	4	30대	4
2	성○○	1	20대	1	9	강○○	2	20대	2
3	이○○	1	20대	1	10	심○○	2	20대	2
4	박○○	1	20대	1	11	김○○	2	20대	2
5	신○○	1	30대	1	12	나○○	3	20대	3
6	정○○	2	20대	2	13	서○○	3	20대	3
7	김○○	2	20대	2	14	심○○	3	30대	3

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연구자가 특정 주제에 관한 집단의 생각과 인식을 얻기 위해 체계적 질문을 통해 구성원 간의 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정보수집기술 중 하나(Frey & Fontana, 1991)로, 참여자들이 토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주제에 관해 논의를 거치게 된다. FGI는 재직 중인 학생의 시간 편의를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2월 2일(토) ~ 12월 9일(토) 기간 중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FGI 실시 전에는 사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법학 관련 학과 선택 동기, 수강 교과목 및 관련 개선요구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FGI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전 설문지의 조사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FGI 기법을 적용한 본 조사 시에는 사전 조사지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질의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자유롭게 관련 의견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 절차 진행에 있어 사전 조사지 서두에는 응답한 사항이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됨을 명기하였으며, FGI 시에도 인터뷰 전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인터뷰 내용 녹음을 위한 동의

를 득하였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자율성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윤리를 준수코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FGI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전사 작업을 거쳤으며, 코딩-범주화-범주의 타당성 확인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Ezzy, 2002)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진 2인이 각각 코딩 및 범주화 단계 작업을 수행하고 비교 분석하며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 단계에는 주요 자료에 별도 명칭을 표기하여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Strauss & Corbin, 1990),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전사 자료를 재검토하며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별도 표기하는 형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주화 단계에는 코딩된 자료들을 범주화 하게 되는데, 연구자들이 각각 유사한 명칭으로 분류된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여 범주별 명칭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각이 범주화한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범주의 타당성 확인 단계를 거쳤으며, 최종 합의된 내용을 재검토 후 정리를

<표 4> FGI 조사 개요

	참석인원	일시
1	1학년 재학생 5인	2023.12.2(토) 11:30~13:00
2	2학년 재학생 5인	2023.12.9(토) 10:00~11:30
3	3·4학년 재학생 4인	2023.12.9(토) 13:00~14:30

<표 5> 사전 설문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학습자 특성	· 학번 / 이름 / 연령대 · 전공(법학)과 재직분야 일치 수준
법학 관련 학과 선택 동기 및 학습기대	· 법학 관련 학과 선택 동기 · 법학 수업에 기대한 점
법학 수업 참여	· 법학 관련 수강 교과목 수 · 교과목별 수업운영 방법 및 적정성 · 교과목별 수업운영 개선 요구
법학 수업 성과	· 실생활 응용 가능성 · 업무현장 적용 가능성 · 소양함양 측면

<표 6> 연구 결과 범주화

영역	내용
성인 대학생의 법학 관련 학과 선택	• 법학 관련 학과 입학은 학위 취득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 학과 중복 지원의 결과 • 과거의 법 관련 업무 경험은 법학 관련 학과 선택에 긍정적 영향
성인 대학생의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동기	•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동기의 다양성 •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신청 시 두려움과 기대 공존
성인 대학생의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경험	• 강의를 통한 기초 학습과 토의 및 팀 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 법률용어 이해 어려움 • 실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요구
성인대학생의 법학 분야 교과목 학습 성과	• 법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 일상생활에서 법 관련 이슈 이해 수준 향상

거쳐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범주화 결과는 <표 6>과 같다.

거죠. 사실 H 대학은 법보다는 행정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 것이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 관심 있던 분야도 하나 넣었어요. 그게 K대 K뷰티학과이구요 (9번 학생)

IV. 연구결과

1. 성인 대학생의 법학 관련 학과 선택 동기

가. 법학 관련 학과 입학은 학위 취득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 학과 중복 지원의 결과

연구참여자 다수는 인사, 회계 등 사무 직종 종사자로 대학 입학전행 당시 타 대학의 경영, 회계, 자산관리 등 경영·행정·사무 분야 학과에 중복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는 건설환경융합, 뷰티 등 전혀 다른 계열 학과에 복수 지원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법학 관련 학과만 지원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전공보다는 대학학위 취득이라는 목적이 우선 작용하고, 법학보다는 직무와 직접 연계된 사회과학분야 실용학문 전공 선호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경영이나 행정 관련 학과에 가고 싶어서 K대 행정학과, K대 기업경영학과 원서를 썼었구요, 융합행정학과도 그런 맥락에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행정학과 법학은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8번 학생)

일단 대학에 붙는 것이 중요하니까, 경영이나 사무 쪽 다 넣어보고 넣다 보니 H 대학도 넣게 된

나. 과거의 법 관련 업무 경험은 법학 관련 학과 선택에 긍정적 영향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현재 재직 분야가 법학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14명 중 6명이었으며, 6명 모두 직무 수행과정에서 법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참여자에게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법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현재 혹은 과거 법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법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다. 이 밖에도 실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금융권에 종사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종종 법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법을 해석하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때 법이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사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법과 행정을 배운다는 점이 좋았어요 (12번 학생)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취업했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하면서 업무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게 법학 전공

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웬지 부족함을 느껴 더 공부하고자 지원한거죠 (13번 학생)

원래 법과 행정에 관심이 있었어서 두가지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 그래서 행정학과는 오히려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여기만 지원했어요. 웬지 법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11번 학생)

2. 성인대학생의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동기

가.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동기의 다양성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법학 분야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다. 학과 개설 교과목이 제한적이어서 필수적으로 일정 부분 법학 분야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이유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는 참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직무수행에서의 필요성, 일상생활에서의 관심 등을 법학 교과목 수강 이유로 언급하였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법 관련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일을 하다 보면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게 되요. 법을 찾아 해석하고 법에 맞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법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서 배우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어요 (14번 학생)

회사와 연관된 법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법의 원리와 개념, 적용사례 같은 것들이 궁금했고, 실생활에서도 실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1번 학생)

저도 제가 일하는 것이 법학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법을 찾는다거나 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민법, 형법, 상법 등에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에서 보는 것 보다 실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중략) (3번학생)

나.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신청 시 두려움과 기대 공존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신청 단계에는 두려움과 기대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법률 용어의 생소함, 법학을 전문 학문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동시에 법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정치 기사들을 보면 다양한 법 용어가 나오는데 이런 게 평소 궁금하기도 했고, 살아가면서 법 관련 지식을 쌓아두면 좋을 것 같아 수강신청을 하기는 했었는데, 수강신청 할 때는 법 용어가 어렵다 보니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싶다는 기대를 했어요.(4번 학생)

저는 법 수업을 듣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저에게 기대를 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도 또 막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중략)...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저만 그런가요?(13번 학생)

3. 성인대학생의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경험

가. 강의를 통한 기초 학습과 토의 및 팀 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H 대학 융합행정학과는 15개 분야 법학 분야 교과목 중 14개(93.3%) 교과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적 수준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실습 형태 수업이 학습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강의를 통한 기초 이해도 중요하나 타인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이나 팀 활동 과정에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넓히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이 1학년 시기에 온·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개설되는 ‘법학개론’ 교과

목을 수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수업에서의 팀 과제 형태 수업에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고 토의를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 토의를 하면서 판례를 이해하는 방법과 나와는 다른 타인의 생각을 들으며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2번 학생)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던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강의를 이해를 못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의에 참여할 수 없고 교수님이 물어보셔도 답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열심히 들었구요, 이론이나 용어를 모르면 토의나 실습 같은 거 할 때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 강의를 듣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데, 강의를 안들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14번 학생)

강의만 들을 때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법학 수업 중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오프라인 때 같이 말을 하고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얻어가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11번 학생)

나. 법률 용어 이해 어려움

연구참여자 일부, 특히 법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낯선 법률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강의 중 모르는 용어를 듣고 나면 수업을 멈추기를 반복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학습 진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수님들께서 지나치듯 말씀하시는 단어 자체를 몰라서 찾다 온라인 수업을 자꾸 멈춰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하고 찾아도 이해가 안될 때도 있어요.(12번 학생)

법학 관련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과 관련된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수업 전 기초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5번 학생)

다. 실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요구

연구참여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교육자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판결 사례 활용이 수업에의 집중도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었다.

교육자료를 반복해서 보는데, 좀 더 상세하길 바라는데, 특히 실제 판결 동영상이나 참고자료가 많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법 용어가 어려워 배우더라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 참고자료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14번 학생)

교수님들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실제 판례 같은 걸 알려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중략)...모든 교수님들은 아니고 일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사례를 먼저 들으면 궁금해서 이론도 듣게 되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판결이 다르게 나면, 왜 이렇게 결정이 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9번 학생)

4. 성인대학생의 법학 교과목 학습 성과

가. 법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법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다수는 법학 분야 교과목 수강 경험을 통해 법 관련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령정보 탐색이나 법 개정에 따른 대응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법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진 것 또한 법학 교과목 수강의 긍정적 결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법학 교과목 수강 이후 직장에서 논쟁 발생 시 문제 유추 및 해석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참여자도 확인되었다.

법 관련 지식을 전혀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법령 해석이나 관련법 개정 사항 같은 걸 더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시켜서 했던 일이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14번 학생)

예전에는 사실 법을 찾아보고 관련해서 뭔가를 해야 하면 어려운 업무라 생각했는데, 근로기준법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익숙해졌고 법 자체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5번 학생)

법학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저는 일할 때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문제인지 유추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요(3번 학생)

나. 일상생활에서 법 관련 이슈 이해 수준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법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법학 관련 교과목 수강 이후 뉴스 기사 등 사회 이슈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총칙 과목 수강하고 나니까 실생활에 밀접한 법과 관련된 사례가 보이면 한 번 더 법안을 찾아보고 있어요(5번 학생)

생활 속에서 실제 법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6번 학생)

뉴스에서 나오는 판례 등 생각보다 실생활에 법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인데, 이슈나 판결 같은게 나오면 관심도 생기고, 또 법에 근거해서 저도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7번 학생)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법학교육 참여 경험 분석을 통해 법학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학 내 법학 관련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 관련 학과 입학 단계의 성인학습자는 학위 취득이라는 우선적인 목적에 따라 사회과학분야 학과를 중복 지원한 결과로 법학 관련 학과를 최종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법학과 재직 중인 산업 분야 혹은 수행 직무가 법과 관련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과 관련한 선행 직무 수행 경험이 법학 전공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법학 관련 학과 성인 대학생들의 학위취득이라는 목적은 Houle(1961)이 제시한 유형 중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전공이나 학과 즉 직업과 연관된 특정 분야의 학사보다는 학사학위 취득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성인 학습자 단과대학이라 하더라도 재직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 입학할 수 있음에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 학습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앞서 안드라고지의 기본 전제에서 논한 바와 같이 과거의 법 관련 선행 경험이 법 관련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남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법학에 대한 선행경험 차이 또한 존재할 수 있음에 교수자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 인지하고, 학생 간 편차를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학교과목 수강 신청 단계에서 신청 동기는 직업생활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성인교육 이론에서 제시하는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동기가 확인되었으며, 법학 관련 교과목의 다양한 수강 동기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직업생활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수강 신청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인해 학습 요구가 발생하고 실제적 적용을 원하게 된다는 안드라고지의 기본적 전제와 부

합한 특성이다. 특히 재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생활 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필요에 따라 법학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기초교양 측면에서의 법교육과 전공과목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융합된 형태(곽한영, 2012)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수강 신청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도 공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가지는 특성, 기존의 법 교육 체계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법이 직무수행과정 뿐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적용·활용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시킴으로서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학 교과목 수강 단계에서는 강의를 통한 기초학습과 토의 및 팀 활동을 통한 학습 강화 경험이 확인되었으며, 법률 용어 이해의 어려움 해소 및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운영 단계에서 토론이나 팀 활동 등 동료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학습 강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상호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앞서 성인교육의 원리에서 수업 활동 단계에 강조되었던 자기주도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학교육이 구체적인 법률 지식을 강의하기 보다는 법적 사고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법적 사고의 특징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구체적인 분쟁에서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최봉경, 2017). 이러한 법적 사고 습득은 단순한 지식 전달 보다는 다양한 사례와 관점을 공유하고 일반용어와는 차이가 있는 법률 용어로 이를 정리하고 법적 해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토의나 팀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활동 장려를 위해 사전 기초용어 개념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사례 제공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앞

서 수강신청 단계에서도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의 생소함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밖에도 학습자 간 선행경험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전 경험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용어사전 등 법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 제공하거나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되는 교안 내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용어설명을 삽입하여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인대학생의 법학 교과목 학습 성과 분석 결과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법과 관련된 업무 효율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 법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 수준 향상을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의 법학 관련 학과 선택의 주 동기가 법학 학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학 학습경험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무 직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가 회계, 인사 등 다수의 직무가 법에 근간하여 이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교과 수강 목적과 관련하여 ‘법 지식’ 습득을 가장 큰 수강 목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지식뿐 아니라 법령정보 탐색 기술이나 법을 대하는 태도, 논리적 사고 등의 측면에서 학습성과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 참여 단계에서 법학 교과목 학습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학습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과 선택 혹은 수강 신청 단계에 법학이라는 학문의 범용적 활용성과 함께 법학 교과목 학습을 통한 다양한 학습성과 창출이 가능함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법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수준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면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시민법 교육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 내 성인학습자들은 법학이라는 하나의 전공을 학습하기

위해 법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것이 아니며, 현재 법학 관련 직무를 수행중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법학 학습을 통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로 공법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영역에서의 법적 기초소양능력이 함양되었다는 것은 일상영역에서 법을 지식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과목 수강을 통하여 법적 사고 자체가 이를 가능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성인학습자의 변화가 확인된 점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 법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초교양 측면에서의 법교육과 전공과목으로서의 법학교육의 융합성향이 강하게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단편적인 법 지식을 전달받기 보다는 학습자간 법적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을 강화하고, 학습 성과 측면에서 법령 정보 탐색, 법적 사고력 함양 등 기술적 혹은 태도적 측면에서의 역량 함양이 이루어진 점은 법학교육의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앞서 성인교육이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은 삶의 일부로 작용하며, 수업은 여러 학습의 일부로 작용한다. 이에 수업에서 교수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동료와의 팀 활동이나 토론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제시한 사전 기초적인 법 관련 정보 제공이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공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학습자 대상 학부 법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평생학습이 전방위적으로 강조되는 현 시점에 학부 법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특정 대학 내 법학과 행정학을 융합한 형태의 학과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모든 상황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이나 법학교육과정만을 운영 중인 학과를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 형태로 실행됨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 곽한영 (2012). 시민법교육(PLE)의 의미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7(2), 1-27.
- 교육부 (2023.2.).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LiFE 2.0) 기본계획(안)**.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https://law.kookmin.ac.kr/undergraduate/major/curriculum>.에서 2024년 1월 16일 인출.
- 김정현 (2018).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교육연구**, 13(3), 79-106.
- 류영철 (202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분석:Y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6(1), 247-277.
-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2024.1.16.). <https://mjlaw.mju.ac.kr/default/03/03.php?topmenu=3&left=3>.에서 2024년 1월 16일 인출.
- 민경훈 (2016). 안드라고지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노인 음악활동의 의미 탐구. **예술교육연구**, 14(4), 195-215.
- 박승배 (2013). **교육과정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박정원, 이성훈 (2009). 법학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통신 기술 활용 가능성 탐색. **교육법학연구**, 21(1), 63-88.
- 양은주, 김계하 (2017). 간호학 전공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461-469.
- 연기영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과 법학교육의 과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4(3), 70-90.
- 오태곤 (2018). 교양법학교육을 통한 기초질서 인식 변화연구. **인문사회** 21, 9(1), 1045-1057.
- 이영록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법학논총** 24(3), 3-23.
- 임명희, 황유진 (2021). LiFE 사업 단과대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와 학습성과 및 관련 요인에 관한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333-344.
- 최대훈 (2023).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의도와 졸업 후 기대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 21, 14(3), 4923-4932.
- 최봉경 (2017). 교양교육으로의 법학교육. **법교육연구** 12(3),

- 127-165.
- 최상덕, 서영인, 한효정, 박인섭, 최영섭, 이덕난 (2018).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RR 2018-23). 한국교육개발원.
- 최우정 (2022). 법학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28(1), 101-142.
- 한성대학교 융합행정학과 (2024.1.16.). https://futureplus.hansung.ac.kr/ko/department/s_education에서 2024년 1월 16일 인출.
- 황영아 (2021). 수업분석을 통한 성인 대상 수업 개선 방안 모색:H대학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623-645.
- Boone, E. J., Safrit, R. D., & Jones, J. (2002).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A conceptual programming model*. Waveland Press.
- Bull, K., & Kimball, S. (2000). Teaching adult (nontraditional) learners in computer mediated learning. Retrieved December 1, 2015, from <http://home.okstate.edu/homepages.nsf/toc/EPsy5720cml60>.
- Cross, K. P. (1980). Our changing students and their impact on colleges: Prospects for a true learning society. *The Phi Delta Kappan*, 61(9), 627-630.
- Davis, J. (2015). Educa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ustralian Nursing & Midwifery Journal*, 23(1), 26-27.
- Dill, P. L., & Henley, T. B. (1998). Stressors of college: A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1), 25-32.
- Ezz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Frey, J. H., & Fontana, A. (1991). The group interview in social research. *The Social Science Journal*, 28(2), 175-187.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Univer. Wisconsin Press.
- Knowles, M. S. (1968). Andragogy, not pedagogy. *Adult Leadership*, 16(10), 350-352.
- Knowles, M. S. (197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dragogy versus pedagogy*. New York: Association Press.
- Knowles, M. S.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Cambridge, The Adult Education Company.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1998). *The adult learner*. Houston: Gulf.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2005). *The adult learner* (6th ed.). 최은수 역 (2010). **성인학습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Markle, G. (2015). Factors influencing persistence among nontraditional university students. *Adult Education Quarterly*, 65(3), 267-285.
- Smith, M. K. (2002). *Malcolm Knowles, informal adult education, self-direction and andragogy*. I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PASCAL International Observatory.
- Strauss, A.,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Inc.
- Taylor, K., Marienau, C., & Fidler, M. (2000). *Developing adult learners: Strategies for teachers and trai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Tough, A. M. (1979). *Choosing to learn*. Retrieved February 15, 2024, from ERIC database.

ABSTRACT

The Analysis of Adult Learners' Experience in Legal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school

Young-ah Hwang¹, Myeong-jin Han²

¹Research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²Professor, Hans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ng i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legal education.

Methods FGI was conducted on 14 adult learners enrolled in law-related departments, and an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ding, categorization, and validity confirmation stages was performed.

Results It was categorized into four areas: adult college students' choice of law-related department, motivation for taking law-related courses, course experience, and learning outcomes. The contents include: Admission to a law-related department is the result of overlapping application to a social science department to obtain a degree, past law-related work experienc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election of a law-related department, diversity of motivations for taking law-related courses, and fear when applying for law-related courses. Coexistence of science and expectations, basic learning through lectures and strengthening learning through discussions and team activitie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legal terms, demand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centered on actual cases, improvement in law-related work efficiency, and improvement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law-related issues in daily life. was derived.

Conclus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 the operation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in universities, the convergence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education as a major subject in terms of basic liberal arts, support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learning process including team activities or discussions with colleagues, and prior law-related information and provision of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were derived as implications.

Key words Legal educati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adult learner, adult education